

의안번호	2209213
의 퇴 인	박덕흠 의원
회 답 일	2025.4.28.
추계번호	25C178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38조제2항 (자립지원)	(제2항)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u>10년</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현행법) 5년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8조제2항 (자립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지원 대상의 증가와 지원 범위의 확대 등으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 의무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군입대 또는 대학 졸업 후 자립을 준비하는 20대 중·후반의 자립준비청년이 취업 관련 지원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립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임

[표 1] 연도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현황: 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서울	276	243	193	112	129	953
부산	178	142	135	119	119	693
대구	89	75	50	37	45	296
인천	73	104	72	47	67	363
광주	75	65	74	59	58	331
대전	63	63	54	33	36	249
울산	28	28	20	14	18	108
세종	3	3	1	2	1	10
경기	388	314	300	187	196	1,385
강원	150	152	122	78	41	543
충북	98	89	72	56	36	351
충남	127	107	54	61	59	408
전북	152	140	134	58	77	561
전남	273	196	170	125	122	886
경북	158	162	113	70	92	595
경남	194	166	148	88	83	679
제주	43	53	28	27	24	175
합 계	2,368	2,102	1,740	1,173	1,203	8,586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지원 대상의 기준이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보호 종료 및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의 규모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현 시점에서 20대 중·후반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신규 사업 계획 및 규모,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및 내용 등을 파악하는 데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2025년 예산 기준 175억 4,400만원)을 실시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취업, 교육, 건강 등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nabo.go.kr